

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PCA 중국 증권자투자신탁 제 1-1 호[주식]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: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제한 등 주요 조항 변경
3. 변경시행일 : 2009년 11월 18일
4.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:

변경 전 집합투자규약 내용	변경 후 집합투자규약 내용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u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</u></p> <p>제33조(이익분배)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p> <p><u>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u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u></p> <p><u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</p> <p>제33조(이익분배)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<u>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</u></p> <p><u>2.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</u></p> <p><u>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%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,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(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)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&lt;부 칙&gt;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